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4234 판결 [증서에 의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피고, 피항소인 (가)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준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21621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약 31,894㎡에 약 63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이하 위 안심보장증서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안심보장증서

(가)B지역주택조합은 아래 가입조합원에 한해 해당 항목 1, 2번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용 포함금액 모두를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1. 창립총회로부터 1년 이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2. 창립총회 시공사 선정시 1군 업체(조달청기준)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 단, 가입자 단순변심 및 자격요건의 문제 등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는 조합규약에 준하여 적용함

※ 본 보장증서는 (가)B지역주택조합의 상기 조합원이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
다.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4. 2.부터 2018. 4. 10.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0원, 업무대행비 및 기타 금액으로 14,000,000원, 합계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9. 20. (가)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 반환 청구

(1)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설령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그에 관한 약정을 추인하기로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가입계약은 자동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계약상 중요부분인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분담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2)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1예비적 청구).

나)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피고의 중요자산 대부분이 공매처분되거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사업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입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2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툼고 있다.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 반환 청구

(1) 피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재산에 속하는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피고의 정관 내지 규약에 따라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제2호 안건 “조합추진위의 수행업무 추인의 건”과 제11호 안건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업무 위임의 건”을 추인하였으나, 위 제2호 안건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한 결의이고 위 제11호 안건도 문언 그대로 위 총회 이후의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를 일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툼고 있다.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약정에 체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사업 예정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행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이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2801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5, 6, 7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건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였으며,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피고는 성립 이후 조합총회를 개최하였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조합장 등을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주택조합이란 주택법상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모집 및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며,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 등 금전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잔존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 등의 처분(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④ 피고의 정관 제23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제7호에서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이 그 내용대로 실행될 경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총유물인 분담금 등이 반환되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감소한 분담금은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잔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잔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담금의 감소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의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규약을 교부받고 숙지하였으며 규약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합규약

동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그런데 갑 제5, 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0.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2020. 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각 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약정 내지 조합탈퇴 시 분담금 등의 환불약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의 결의 또는 피고의 원고 등 조합원에 대한 통지 등 행위에 의해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조합추진위의 수행업무(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포함) 추인의 건”, 제11호 안건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업무 위임의 건”을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제2호 안건은 피고의 업무로 기집행된 자금(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광고, 홍보비, 토지매입 용역계약에 의한 계약금, 설계사, 신탁사, 홍보관용역 등 용역업체 계약금 및 기성금, 운영비, 기타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및 조합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과 각종 계약체결 행위를 추인하고, 피고가 행한 업무수행 일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고, 위 제11호 안건은 조합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 업체 선정, 계약체결(토지매매, 업무대행사 등) 및 조합규약 제30조에서 정한 조합 집행 사무 일체를 조합장 및 조합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일괄 위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여기에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창립총회 이전에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고지되었다거나 실제로 위 창립총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서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무효행위의 추인을 위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제2호, 제11호 안건의 의결에 의해 이 사건 약정이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조합원 가입을 철회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가입철회’ 절차를 안내한 사실(갑 제7호증의 21 참조), 2018. 11. 23.경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이 요구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밝힌 사실(갑 제7호증의 13 참조), 2019. 6. 3.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환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한 사실(갑 제10호증 참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총회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총회결의가 이루어졌거나 조합원들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추인도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되므로, 원고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가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하였는데, 그 광고내용에는 “안심보장제 - 조합설립인가 신청(1년 이내), 1군 시공사(현재 5개 업체 협의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12 중 2, 3쪽 참조). 여기에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명시된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여부(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의 임의탈퇴 여부 및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 모집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치, 주변 교육환경,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의 적극적인 광고내용,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1 내지 60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불확정적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후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을 둘러싼 언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확정적으로 유효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유동적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가입계약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피고의 광고 등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행위의 종류, 목적,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제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가입계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4. 2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4.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위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가입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22.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20. 4. 2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1) 원고는 2021. 4. 12.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2)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